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10. ~ 3.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12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u>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 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둔다.</u>	<u><삭 제></u>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 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③ ----- ----- ----- ----- --- 2025년 3월 31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